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1. 고시명 :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-31호)

가. 개정이유

○ 「모바일 푸르니 적금」 신상품 출시, 「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」 변경, 「2040$^{+\alpha}$정기예금」 상품개선에 따른 우체국예금 약관 개정

나. 주요내용

○ 「모바일 푸르니 적금」 신상품 출시에 따른 약관 신설

구 분	내 용
예금종류	적립식 예금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(1인 1계좌)
가입기간	1년
가입금액	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월 50만원 까지
판매채널	스마트뱅킹
적용이율	기본이율(정기적금)+우대이율(최고 연 2.05%p)

○ 「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」 의 약관 ‘택배’ 명칭을 ‘소포’ 로 변경

○ 「2040$^{+\alpha}$정기예금」 은 우수고객 제도 통합 추진에 따라 우대금리 개선

종류	현행	개정
우대금리	(창구가입) 예금·보험·우편 우수고객 (인터넷· 스마트뱅킹) 전자금융 우수고객	**예금·보험·우편 우수고객** **(※ 우편 우수고객은 창구 가입시 적용)**

다. 시행일 : 2021.09.01.(수)

※ 2040$^{+\alpha}$정기예금의 약관 개정은 2021.09.10.(금)

2. 발령요청자 : 예금사업과장